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도이치자산운용(주)
(영문명) Deutsche Asset Management (Korea) Co.,Ltd
(홈페이지) <http://www.deam-korea.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영풍빌딩 19층
(전 화) 02-724-7400

대 표 이 사 : 신용일, 김태형

담 당 책임자 : (직 책) 준법감시인
(성 명) 정 진 권 (전 화) 02 - 724 -7460

작 성 자 : (직 책)준법감시부 부장
(성 명) 장 은 정 (전 화) 02 - 724 -7461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5-9호)

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중개수수료지급
2. 원고·신청인	지케이부동산중개주식회사
3. 판결·결정내용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판결·결정사유	1) 중개행위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2) 피고가 매도중개를 의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공개입찰과정에서 피고를 위해 객관적으로 부동산 매도를 위한 알선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볼만 한 아무런 정황이 드러나지 않으며, 키움증권이 우선협상자의 선정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별다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키움증권으로 부터 200,0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 받은 점을 비취볼 때, 원고는 키움증권에게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키움증권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하도록 알선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키움증권에게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어떠한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부동산의 공개경쟁입찰절차가 실제로는 피고와 키움증권간에 사전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09년 12월 22일
7. 확인일자	2010년 1월 27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상의 주의>

- 주1) 당해법인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소송(가처분 포함) 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이 확인된 때 신고한다.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신청 등 법인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
- 주2) “판결·결정사유”는 소송의 포기·취하·인낙·화해, 판결, 결정, 명령, 신청철회 등 사건이 종료된 원인을 기재한다.
- 주3)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판결·결정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 주4)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외국지주회사 포함)의 자회사(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